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기동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975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6. 21.

발 의 자 : 기동민 · 박주민 · 정춘숙
신창현 · 김상희 · 강창일
인재근 · 이철희 · 이재정
김영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사상자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·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그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도록 정하면서 별도로 민간위원의 구성비율은 정하고 있지 않음.

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 결정·변경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사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·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바, 그 심사가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학·법학·사회복지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재해구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이 위원 구성 시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

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·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2항).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의사상자심사위원회) 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 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· 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후단 <u>신설></u></p> <p>③ ~ ⑤ (생 략)</p>	<p>제4조(의사상자심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 이 경 <u>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</u> <u>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</u> <u>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과 같음)</p>